

AS-IS	TO-BE	
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	<p>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24. “전자서명”이라 함은「전자서명법」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.</p>	신규
제 5 조 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	<p>제 5 조 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</p> <p>① 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.</p> <p>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.</p> <p>1.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(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(이하 “공인전자서명”이라 한다) 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 동의를 얻은 경우</p>	변경
제 13 조 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	<p>제 13 조 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</p> <p>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p> <p>1.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</p> <p>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p> <p>1.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.)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</p>	변경